

부산광역시체육회
체육진흥기금 관리 규정

● 부산광역시체육회 체육진흥기금 관리 규정

제정 2016년 06월 15일

개정 2017년 07월 24일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체육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체육진흥기금이라 함은 시민체육진흥 및 우수선수, 지도자 발굴 육성과 시민체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을 말한다.

제3조(기금의 설치 및 재원) ① 체육진흥기금은 체육진흥특별회계(이하 ‘체육진흥기금’이라 한다)로 설치한다.

②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한다.

1. 독지가의 체육성금 기탁금
2. 체육진흥기금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의 수익금
3. 기타 성금
4. 부산광역시시장(체육회장)이 필요로 하는 기타 재원

제4조(기금조성기관) 기금 조성은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체육회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조성한다.

제5조(기금의 용도) ① 기금은 다음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.

1. 부산광역시 선수, 지도자 육성사업
2. 부산시민 체위향상을 위한 체육사업
3. 부산광역시체육회 사업, 예산의 보전
4. 부산개최 각종 국제대회의 지원 사업
5. 기타 경기력 향상 및 체육진흥의 수반사업

② 부산광역시시장(회장)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체육사업

제6조(기금의 예탁) ① 조성된 기금은 시중은행에 신탁예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부산광역시시장(회장)의 승인을 받아 초과금액 및 발생

이자에 한하여 별도 예치 관리할 수 있다.

② 조성된 기금은 부산광역시체육회장 직명으로 예치한다.

제7조(기금의 관리운용) 기금관리담당자는 부산광역시체육회장이 지정하는 회계담당자(경영지원실장 또는 경영지원과장)로 한다.

제8조(기금의 지출) 기금의 지출은 부산광역시장(회장)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제5조에 의한 필요한 사업을 위해 지출할 수 있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회장의 재가로서 시행하고 차기 이사회시 보고토록 한다.

제9조(기금관리상황 보고) 기금운용에 관한 보고는 변동이 있을 시 즉시 회장에게 제반 상황을 보고하고 연말결산 전 내용 전반에 관하여 정기보고 하여야 한다.

제10조(기금의 정산) 기금의 정산은 정부예산회계법을 준용하고 기금 사용 즉시 관련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.

제11조(변제) ① 기금의 사용이 목적 외에 사용되었거나 기금 관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기금을 유용 또는 횡령하여 상당한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환 또는 변상을 명하여야 하며, 명령받은 자는 1주일 이내에 변상하여야 한다.

② 변제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이를 이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그 책임을 이행케 한다.

제12조(기타)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부예산회계법을 준용한다.

부 칙(2016.06.15.)

이 규정은 본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 한다.

부 칙(2017.07.24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체육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